

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○ 부서명 : 도시계획과

○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

구분	조치사항				비고
	총건수	시정	개선	권고	
합 계	7	1	4	2	
조치완료	3	1	2	0	
조 치 중	3	0	2	1	
장기검토	1	0	0	1	
조치불가	0	0	0	0	

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 적 사 항	조치결과 및 추진계획	완료구분
도 시 계 획 과	권 고	51. (산업 54) 구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(재정비)용역 신속히 추진 ○ 주민들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용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료 하기 바람.	○ '24.3월 「2040년 구미도시기본계획」 승인 이후, 구미도시관리계획(재정비)를 추진중에 있으며, ○ 주민·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히 처리하 도록 하겠음	조치중
	개 선	52. (산업 55) 택지조성 사업 시 공공용지 확보 의무화 방안 강구 ○ 일정면적의 민간개발 택지 조성 사업 시 공공용지(경로당, 마을회관)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	○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적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공공청사부지*를 확보하였으며, *적동지구 : 공공청사 4,137㎡ ○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반영하 겠음.	조치완료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 적 사 항	조치결과 및 추진계획	완료구분
도 시 계 획 과	개 선	53. (산업 56) 관내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강구 ○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으로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노력하기 바람.	○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. ○ 주요 건설현장에 대해 지역건설업체·생산자재·장비 사용 및 지역인력 고용을 적극 독려 중이며,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·관리하고 있음. ○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음.	조치완료
	개 선	54. (산업 57) 신공항 이전 관련 대비 철저 ○ 신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이 선제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.	○ 204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의 충분한 확보로 공항경제권 중심지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, ○ 통합신공항 및 5산단에 따른 우리시 장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하여 ‘도시교통정비 기본 계획 및 중기계획(교통정책과) 및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(도로철도과)’ 시 협의를 통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.	조치중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 적 사 항	조치결과 및 추진계획	완료구분
도 시 계 획 과	시 정	55. (산업 58)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부서 대처 미흡 ○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악취저감대책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.	○ 관련부서 악취저감대책 수립 요청 공문 발송 ※ 관련부서 추진 사항 • 2024년 악취관리 종합추진계획[환경관리과] -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-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 운용 - 악취배출시설 지정악취 측정 용역 시행 - 주거인접지역 축사악취 특별점검 • 축산농가 축분수거비 지원 사업(1회 추경)[축산과] • 통합악취제거(외부안개분무) 시스템 지원 (1회 추경)[축산과] • 축산악취TF팀 구성에 따른 회의 진행 - 부시장, 이지연 의원, 농업기술센터, 환경관리과, 농업정책과	조치완료
	권 고	56. (산업 59) 지역 건설업 노동자 피해 구제 방안 강구 ○ 지역 건설업 노동자가 불법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피해를 입을 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.	○ 지역 건설업 노동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주요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지역노동자 우선고용을 요청하고, ○ 전부서 대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 제출시 관련현장에 지역노동자를 우선 고용토록 요청하겠음.	장기검토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 적 사 항	조치결과 및 추진계획	완료구분
도 시 계 획 과	개 선	57. (산업 60) 도시계획 결정 시 주민의견 수렴 강화 ○ 정보가 주민에게 보다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절차를 밝을 것.	○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시 주민 공람(도보, 신문광고, 시홈페이지, 반상회, 전광판) 등을 통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	조치 중